

비대면 원격수업 및 대면기반 융합수업 FAQ-[교육미디어혁신센터]

- Q1.** 비대면 원격수업 및 대면기반 융합수업 강좌 콘텐츠는 학점당 25분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나요?
- A1.** 네, 콘텐츠는 반드시 학점당 25분 이상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학점 교과목은 25분×3개=75분 이상으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 Q2.** 비대면 원격수업 및 대면기반 융합수업 강좌 콘텐츠는 제작 시 주별로 1개로만 제작하여야 하나요?
- A2.** 아니오, 콘텐츠 제작 시 주별로 1개로 제작해도 되고 2개 이상으로 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3학점 교과목 1주 분량은 75분×1개=75분, 40분+35분=75분, 25분×3개=75분, 15분×5개=75분 등으로 제작합니다. 다만 **반드시 학점당 25분 이상 조건은 만족**하셔야 합니다.
- Q3.** 비대면 원격수업 및 대면기반 융합수업 강좌 콘텐츠 제작 시 교안에 사용되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물 등의 저작물을 제한이 없이 이용해도 괜찮나요?
- A3.** 아니오,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며, **타인의 모든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오프라인 수업 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작물 이용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e-Campus 이용안내-자료실 '**원격수업 저작물 이용 가이드**'와 '**저작권 안내, 저작권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올바른 교육정보 공유 방법**'(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교육자료 2017-27)를 확인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종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 핵심 내용
어문 저작물	저작물 전체의 10% 미만 내에 이용 가능
음악 저작물	저작물 전체의 20% 미만(최대 5분)내에 이용 가능
영상 저작물	저작물 전체의 20% 미만(최대 15분)내에 이용 가능
이미지 저작물	사진 등과 같은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그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이용 가능

※ 저작물 전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 허락(동의) **음악 및 영상 저작물 이용 시 이용범위 해석은 작은 쪽으로 적용해야 함.**

[자주 묻는 저작권 사례 안내]

- 출판사가 제공하는 PPT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강의 동영상 제작전에 출판사로부터 강의 동영상 제작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온라인 배포 및 전송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사가 제공하는 PPT를 이용해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 전송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PPT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 동영상 제작 시 PPT 내에 사용하는 음악 저작물 전체 시간이 5분 경우 20%인 1분, 전체시간이 30분인 경우 최대 5분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저작물 전체 시간이 15분 경우 20%인 3분, 전체 시간이 90분인 경우 최대 15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 강의 자료에 (인터넷) 뉴스 기사를 사용하는 경우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가 아닌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주관적 의견)이 들어가 있는 뉴스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뉴스 기사를 이용하려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 (주관적 의견)을 제외하고 발췌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4) 수업에서 교재로 채택한 교과서에 실린 문제 및 풀이는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법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문제 및 풀이를 수정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5) 강의 자료에서 참고할 자료에 대해 인터넷 링크를 거는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Q4. 비대면 원격수업 및 대면기반 융합수업 강좌의 강의 콘텐츠 및 강의 자료에 저작권의 침해 방지 및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나요?

A4. 네,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우리 대학교 경고문구

“본 강의 동영상 및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본 강의 동영상 및 자료는 상명대학교 재학생들의 수업목적으로 제작·배포되는 것이므로, 수업목적으로 내려받은 강의 동영상 및 자료는 수업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 및 타인에게 복제, 전송하여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행위 주체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강의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고 등록하여 ‘경고문구’ 삽입이 어려우신 경우 e-Campus 강좌 강의실에 입장해서 ‘**편집모드-자료 및 활동 추가**’ 기능인 개요 또는 과목공지사항 게시판 TOP에 고정노출 되도록 ‘경고문구’를 등록해서 학생들에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학교 접근제한조치

1. 강의 콘텐츠 및 강의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제한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 파일을 상명대학교 ‘**e-Campus에 직접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접근 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천**)
 - 나. 강의 동영상 파일을 **YouTube에 업로드** 하는 경우 **일부공개** 또는 **미등록 옵션의 접근제한조치**를 이용해 강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상명대학교 e-Campus에서 ‘**이러닝 콘텐츠(임베디드 방식)**’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접근 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강의 콘텐츠 및 강의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제한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명대학교 e-Campus 강의실 ‘자료 및 활동 추가’ 각 기능별 등록(수정) 화면에서 접근제한 추가(날짜: 시작, 종료일시)를 이용하여 해당기간 이후에는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상호작용을 강의 콘텐츠 제작물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A5. 아니요, 온라인 상호작용 운영은 콘텐츠 제작물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e-Campus 강좌 강의실에 입장해서 ‘편집모드-자료 및 활동 추가’ 기능인 과제, 퀴즈, 토론 등을 이용해서 주차별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상호작용 방법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작·배포한 ‘e-Campus 교수자 매뉴얼’ 또는 교육미디어혁신센터에서 제작·배포한 ‘e-Campus 원격수업 강좌(e/b/s) 활용 매뉴얼 (교수자)’을 e-Campus 이용안내-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서 필독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Q6. 비대면 원격수업 및 대면기반 융합수업 강좌의 온라인 수업의 학습(출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6. **온라인 수업의 학습기간은 7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교수자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1주차의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감안하여 학습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대면기반 융합수업 강좌는 오프라인 강의 날짜, 교시(시간)를 원칙으로 시작 및 종료일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비대면 원격수업은 시스템에서 자동 설정되며, 학습기간(강의시작, 종료기간) 변경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ex) 1주: 3.2(화) 00:00~3.8(월) 23:59

Q7. 온라인 상호작용 운영 기간을 강의 콘텐츠 학습(출석)기간과 다르게 설정해도 되나요?

A7. 네, 온라인 상호작용 운영은 강의 콘텐츠 등록 기간과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Q8. 강좌 학점당 온라인 수업시간은 무엇을 말하나요?

A8. 학점당 온라인 수업시간은 주차(일)별 콘텐츠 시간 25분 이상과 상호작용 시간 25분 이상을 합산하여 총 수업시간이 50분 이상으로 구성된 시간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학점	수업유형	학점당 총 수업시간		
			총 수업시간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상호작용*
비대면 원격수업 / 대면기반 융합수업	1	50분	50분	25분 이상	25분 이상
	2	50분	100분	50분 이상	50분 이상
	3	50분	150분	75분 이상	75분 이상
	4	50분	200분	100분 이상	100분 이상
	5	50분	250분	125분 이상	125분 이상
	6	50분	300분	150분 이상	150분 이상

※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학년도/학기의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을 참조하여 수업 운영

Q9. 온라인 상호작용의 유형과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9. 온라인 수업 중 상호작용 시간이란 과제, 퀴즈, 토론, Q&A 활동(평가, 첨삭, 피드백 등 포함) 시간을 말하며 해당 항목을 잘 조합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호작용 인정 기준		
구분	내용	인정시간
과제	과제 등록건수 1개당	50분
퀴즈	문제유형 문제 1개당	15분
토론	토론 등록건수 1개당	25분
Q&A	주차당 Q&A 게시판 질의응답 1건당 (질의응답은 시간은 최대 30분까지만 인정)	10분

단, Q&A는 주차별로 Q&A 게시판을 생성하여 글쓰기 제한 기간을 두고 운영 하여야 하며, 주차별 Q&A 등록 건이 없을 경우 다른 상호작용 항목으로 대체 운영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면기반 융합수업'에 한해서 온라인 상호작용을 운영하지 않으시려면 온라인 상호작용 시간만큼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학점 교과목은 원래 온라인 강의 콘텐츠 시간 75분과 온라인 상호작용 75분 추가분을 합쳐서 150분으로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상호작용 운영 기준 예

구분	학점	수업 유형	학점당 총 수업시간		
			총 수업시간	온라인 콘텐츠 시간	온라인 상호작용시간
비대면 원격수업	1	50분	50분	25분	25분 ① 퀴즈 2문제 or ② 토론 1개
	2	50분	100분	50분	50분 ① 과제 1편 or ② 퀴즈 4문제 or ③ 토론 2개
	3	50분	150분	75분	75분 ① 과제 1편 + 퀴즈 2문제 or ② 과제 1편 + 토론 1개
	4	50분	200분	100분	100분 ① 과제 2편 or ② 과제 1편 + 토론 2개 or ③ 퀴즈 7문제
	5	50분	250분	125분	125분 ① 과제 2편 + 토론 1개 ② 과제 2편 + 퀴즈 2문제 or ③ 과제 1편 + 토론 3개 or ④ 퀴즈 9문제
	6	50분	300분	150분	150분 ① 과제 3편 or ② 과제 2편 + 퀴즈 4문제 or ③ 과제 1편 + 토론 4개 or ④ 퀴즈 10문제
대면기반 융합수업	1	50분	50분	40분	10분 ① 퀴즈 1문제 or ② 토론 1개
	2	50분	100분	50분	50분 ① 과제 1편 or ② 퀴즈 4문제 or ③ 토론 2개
	3	50분	150분	80분	70분 ① 과제 1편 + 퀴즈 2문제 or ② 과제 1편 + 토론 1개
	4	50분	200분	100분	100분 ① 과제 2편 or ② 과제 1편 + 토론 2개 or ③ 퀴즈 7문제
	5	50분	250분	125분	125분 ① 과제 2편 + 토론 2개 ② 과제 2편 + 퀴즈 2문제 or ③ 과제 1편 + 토론 3개 or ④ 퀴즈 9문제
	6	50분	300분	150분	150분 ① 과제 3편 or ② 과제 2편 + 퀴즈 4문제 or ③ 과제 1편 + 토론 4개 or ④ 퀴즈 10문제

※ 학점당 온라인 상호작용 시간(분) = 학점당 총 수업시간 50(분) - 온라인 콘텐츠 시간(분)

Q10. 온라인 상호작용은 반드시 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A10. 아니요, 온라인 상호작용은 운영을 하셔야 하지만 성적 반영 여부는 자율입니다.

Q11. 비대면 원격수업 및 대면기반 융합수업 강좌에서 강의녹화시스템은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11. 교무처(학사운영팀, 교무팀)의 학년도/학기의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을 확인하여 수업에 이용하시면 되고 사용방법은 e-Campus 이용안내-자료실의 ‘강의녹화시스템 교수자 간편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